
제61차 유엔 인권이사회 주제별 인권 동향 및 주요 논의 결과

2026. 4.



정 책 협 력 국
국 제 인 권 과

목 차

1. 개요	1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1
3. 고위급 회기 한국 정부 발언문	2
4.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3
• 허위조작정보가 인권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영향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 요약	
• 개인정보의 국제적 수집	
• 존엄을 수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7
• 적절한 주거권과 재정착에 대한 이행지침	
• 인권 기반 통합적 접근을 통한 SDGs 이행의 모범사례·과제 및 교훈	
3) 아동 인권	9
• 아동 폭력에 관한 연례보고서	
• 아동매매, 성착취,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	
• 아동 인권에 대한 연례 회의: 분쟁 시 아동 인권 침해와 아동의 권리	
4) 장애인 인권	12
• 교통 및 주거를 포함한 장애 포용적 기반 시설	
• 장애인의 평등한 정치 참여	
• 장애인 권리에 관한 연례 상호토론: 교통과 주거를 포함한 장애 포용적 시설	
5)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14
• 이주민 인권 보고서	
•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 관련 보고서	
•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5주년 고위급 패널 토론	
5.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및 전문가 메커니즘 수임자	16

참고 1. 제61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

참고 2. 제61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1 개요

- 기간: 2026년 2월 23일~3월 31일
- 장소: 스위스 제네바
- 채택된 보고서: 128개(주제별 특별절차 수임자의 국가방문 보고서 포함)
- 채택된 결의: 38개(28개 합의로 통과, 10개 투표로 통과)
- 13개국에 대한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실무그룹 결과보고서 채택
- 17명의 특별절차 수임자 신규 선출
- 6번의 패널 토론 개최

2 국제 인권 상황 브리핑(유엔인권최고대표)

- 유엔인권최고대표는 국가 권력이 궁극적으로 사람들의 기본적 필요를 충족하는 데 활용되어야 하나, 인권 존중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신뢰가 붕괴되고 권력이 지배와 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음을 지적함. 나아가 인권은 권력 행사를 제약하고 인간의 존엄과 의사를 반영하도록 하는 핵심 기준임을 강조함.
- 또한 국제사회가 점차 불안정해지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무력 분쟁과 잔혹 행위의 확산, 국제 규범을 뒷받침하는 제도의 약화**에 우려를 표명함. 특히 수단, 우크라이나,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 미얀마에서의 국제법 위반 사례를 언급하고, 예멘과 에티오피아의 인도적 위기, 시리아 및 레바논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지적함. 이에 대해 국제법 준수, 위험성이 있는 무기 이전 중단, 혐오 표현 대응, 책임성 강화, 인권 기반 신뢰 구축 조치의 필요성을 촉구함. 이란에서 시위를 진압한 후 아동을 포함한 사형 선고가 증가함에 우려를 표명하며, 독립적 조사, 공정한 재판 보장 및 사형 집행 유예를 요구함.
- 나아가 권위주의 정부들이 그들에게 반대하는 의견을 범죄화하고, 정보 접근을 제한하며, 시민사회와 사법부를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권력을 공고화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함. 사헬 지역과 엘살바도르 등에서의 법집행 군사화, 다수 국가에서의 선거 관련 정치적 폭력과 민주적 절차 훼손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포함. 동시에 전 세계적으로 시민사회 공간이 축소되고 언론인 대상 공격이 지속되는 가운데 책임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을 지적하며, 벨라루스, 이집트, 인도 등에서 국가안보를 이유로 기본권이 제한되고 인권옹호자가 구금되는 사례를 비판함.

- 이와 함께 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혐오, 여성 대상 폭력 및 온라인에서의 공격이 증가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일부 국가의 이주민 송환 정책이 이주민의 생계, 보건, 교육 등 경제적·사회적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있음을 언급함. 또한 국가 간 및 국가 내 불평등 심화, 개발 목표 이행 지연, 기후위기 대응 부족, 인공지능 기술을 둘러싼 권력 집중 문제를 주요 과제로 제시함. 특히 소수 기업과 개인에 집중된 기술 통제력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며 규제와 감독, 책임성 강화 필요성을 강조함. 끝으로 국제적 연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다 공정하고 평화로운 사회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권 연대(Global Alliance for Human Rights) 출범 계획을 소개함.

3 고위급 회기(High Level Segment) 한국 정부 발언문

* 고위급 회기(High Level Segment)

- 매년 3월 개최되는 유엔 인권이사회는 당해 연도 첫 회의로, 각국 정부, 유엔 사무총장, 유엔 인권최고대표 등이 유엔에서 한 해 동안 집중할 인권 이슈를 발표하는 고위급 회기(High Level Segment)를 개최함. 고위급 회기의 발표문을 통해 유엔 및 각국의 2026년 인권 관심사와 유엔 인권이사회 전체 논의의 방향성을 살펴볼 수 있음.
-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109개국이 발언하였음.

- 현재 국제사회는 장기화 된 무력 분쟁, 심화되는 개발 격차, 기후위기, 급속한 기술 발전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위기(polycrisis)’ 상황에 직면해 있음. 기술 발전이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고 있으나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을 경우 무분별한 감시, 허위조작정보 확산, 차별 심화 등 인권 침해를 초래할 수 있음. 또한 가자지구, 우크라이나, 수단 등에서 나타나듯 기술이 분쟁 양상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이러한 구조적 압력이 여성, 아동, 이주민, 난민 등 취약계층의 인권 상황 악화로 이어지고 있음.
- 일방주의 확산으로 다자협력 체계가 약화되고 글로벌 거버넌스 공백이 확대

되는 상황에서 UN80 이니셔티브를 통한 유엔 체제 강화 및 개혁 필요성이 강조됨. 이러한 상황에서 인권이사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며, **분쟁·개발·기술 변화 대응 과정에서 국제인권규범이 정책의 기준이 되어야 함.**

- 대한민국은 법치주의와 시민 참여를 기반으로 민주주의 제도의 회복력을 보여왔으며, 인공지능 등 신기술 개발 국가로서 인권과 공공책임에 부합하는 기술 거버넌스 구축에 기여하고 있음. 이를 위해 △신기술 대응에 있어 인권 기반 접근 및 책임 있는 AI 원칙 확산 △보건, 사회보호, 디지털 접근성, 기후 회복력 등을 중심으로 한 개발협력 확대 및 SDGs 달성 기여 △분쟁 관련 성폭력 피해자 보호 및 책임성 강화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강화 계획을 제시.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명예 회복 노력과 관련 법률 개정 등을 통해 역사적 교훈을 바탕으로 피해자 보호를 지속할 예정임. 아울러 한반도에서는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추진하는 한편, 이산가족,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인도적 현안 해결을 위한 대화 노력도 병행할 것임. 인권이사회 20주년을 맞아 다자주의 강화와 보편적 인권 보호를 위한 국제협력 의지를 밝힘.

4 주제별 인권 동향

1) 시민적·정치적 권리

- 허위조작정보가 인권 향유 및 실현에 미치는 영향(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 A/HRC/61/68)
 - 디지털 기술과 소셜미디어 확산으로 허위조작정보(disinformation)가 대규모로 유통되면서 정보 신뢰성이 약화되고, 표현의 자유와 정보접근권 등 기본적인 인권에 중대한 위협이 발생함. 허위조작정보는 특히 소수자와 반대 의견을 겨냥하여 차별·위협·침묵을 유도하는 수단으로 활용됨.
 - 또한 허위조작정보는 표현의 자유, 사생활, 평등권, 정치참여권, 건강권, 환경권 등 다양한 권리를 동시에 침해하며, 공적 의사결정 왜곡과 민주주의 약화를 초래함. 특히 과학정보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여 공중보건 대응과 기후위기 대응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침.
 - 국가, 기업, 정치인, 플랫폼 기업 등 다양한 행위자가 허위조작정보 확산에

관여하며, 알고리즘·데이터 기반 광고·인공지능 기술이 이를 증폭시키는 구조적 요인으로 작용함. 특히 플랫폼 기업의 이윤 중심 구조와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됨.

- 이로 인해 여성, 소수자, 이주민, 언론인, 인권옹호자 등 취약집단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으며, 혐오·낙인·정치적 배제 등 구조적 차별이 심화됨. 선거, 분쟁, 보건·환경 위기 상황에서는 허위조작정보의 영향이 더욱 심각하게 나타남.
- 인권이사회 자문위원회는 허위조작정보를 구조적 문제로 보고 ‘정보 생태계의 무결성(information integrity)¹⁾을 핵심 대응 틀로 제시하며,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독립언론 보호, 기업 책임성 및 투명성 확보를 강조함. 국가에는 과도한 규제 남용을 지양하면서 인권 기반 대응을, 기업에는 인권 실사와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지 의무를 권고함.

○ 허위조작정보 확산 방식 및 대응 방안에 관한 전문가 워크숍 결과 요약(인권 최고대표, A/HRC/61/80)

-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 발전으로 규모와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허위조작 정보는 공공 신뢰를 약화시키고 민주주의, 인권 보호, 평화와 안보에 대한 구조적 위협으로 작용함. 특히 선거 조작, 혐오 확산, 폭력 유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
- 동시에 허위조작정보 대응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위험이 지속적으로 제기됨. 모호하거나 과도한 규제, 형사처벌 중심 접근은 언론·시민사회 활동을 위축시키고 오히려 공공 신뢰를 저하시킬 수 있어, 국제인권법 기준(합법성·필요성·비례성)에 부합하는 대응이 강조됨.
- 국가뿐 아니라 플랫폼 기업, 정치인, 온라인 인플루언서 등 다양한 행위자가 허위조작정보 생태계에 관여하며, 특히 알고리즘과 플랫폼 구조가 극단적·선정적 콘텐츠 확산을 유도하는 문제점이 지적됨.
- 허위조작정보에 대해 규제적 접근과 함께 참여적 대응이 중요하게 논의됨. 사실관계 확인과 미디어 리터러시²⁾는 효과적인 수단으로 평가되나, 신념·

1) 정보 생태계의 무결성은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하고, 개방적·안전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유통되는 상태를 의미함.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면서도 허위조작정보로부터 정보 환경이 왜곡되지 않는 균형 상태로 단순히 허위조작정보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정보 접근 ▲독립적이고 다양한 언론 환경 ▲이용자의 비판적 정보 판단 능력(미디어 리터러시) ▲기업과 플랫폼의 투명성과 책임성 등이 함께 갖춰진 구조적 조건을 포함함.

2) 다양한 정보와 콘텐츠를 비판적으로 이해·평가하고, 사실 여부를 검증하며, 스스로 책임 있게 정보를 소비·생산할

정체성과 결합된 허위조작정보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며, 이에 플랫폼 투명성 강화, 연구자 데이터 접근, 다자 협력 등 복합적 대응이 필요함.

- 위키피디아와 같은 커뮤니티 기반 검증 모델, 시민사회 참여, 교육 프로그램 등은 정보 신뢰성 제고에 기여하는 사례로 제시됨. 다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자들에 대한 불신, 이용자 관심 저하 등으로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 다양한 접근의 병행이 요구됨.
- 워크숍 참여자들은 허위조작정보 대응의 핵심으로 표현의 자유 보호를 전제한 다층적 접근을 강조하며, 국가별 상황에 맞는 정책 설계, 이해관계자 참여, 미디어 리터러시 강화, 플랫폼 책임성 및 투명성 제고가 필요함에 동의함.

○ 개인정보의 국제적 수집(프라이버시 특별보고관, A/HRC/61/48)

- 디지털 환경에서 기업·개인 등이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프라이버시권이 충분히 보호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함. 특히 데이터 수집자가 타국에 위치할 경우 적용 법률과 관할권이 불명확해 책임 회피와 ‘인터넷상 면책’ 문제가 나타남.
- 현행 규제는 주로 ‘국내 수집’과 ‘국경 간 데이터 이전’에 초점을 두고 있어, ‘개인정보의 국제적 수집(International collection of personal data)’이라는 새로운 현상을 충분히 다루지 못함. 국경을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은 데이터가 이전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주체가 직접 데이터를 취득하는 방식으로, 기존 규제 체계의 사각지대를 형성함.
- 쿠키 등 기술을 통해 이용자의 검색기록, 위치, 기기정보 등 다양한 개인정보가 대규모로 수집되며, 이는 개인에 대한 추적·프로파일링을 가능하게 함. 특히 플랫폼 기업은 물리적 소재지 없이도 전 세계 이용자의 데이터를 수집·처리할 수 있음.
-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의 문제는 국제 규범 부재, 국가 간 규제 격차, 관할권 충돌 등 구조적 한계를 동반함. 일부 국가는 관련 법제가 없거나 미비하여 ‘데이터 헤이븐’³⁾이 형성되고, 이는 개인정보 보호 수준의 불균형을 심화시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함. 단순히 인터넷이나 플랫폼을 사용하는 기술을 넘어서, 정보의 출처·맥락·신뢰성을 판단하는 역량을 포함함. 특히 사실 확인을 위해 여러 출처를 비교(트라이앵글레이션)하고, 허위정보의 특징과 확산 방식을 이해하여 조작·왜곡된 정보를 식별하는 능력이 핵심 요소로 강조됨.

3) 데이터 헤이븐(data haven):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제가 없거나 매우 미비하여, 개인 데이터가 충분한 보호 없이 수집·처리될 수 있는 국가 또는 관할지역.

- 특별보고관은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국경을 초월하는 구조적 문제임을 강조하며, 개별 국가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국제적·협력적 대응이 필요함을 지적함. 특히 개인정보 보호 기준을 데이터 이동과 함께 유지하는 원칙의 확장이 요구됨.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구속력 있는 조약 마련, 국내 법의 역외 적용 확대, 국가 간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국제적으로 수집하는 것에 대한 규율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 **존엄을 수호하고 권리를 옹호하기(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A/HRC/61/40)**

-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후퇴와 권위주의 강화로 인해 인권옹호자의 활동 공간이 축소되고 있으며, 살해·실종·위협 등 심각한 위협이 지속됨. 동시에 일부 국가의 국제인권법 무시와 이중기준, 인권 재정 축소로 인해 국제인권체계에 대한 신뢰도 약화됨.
- 인권옹호자들은 개인적·사회적 불의 경험과 인간 존엄에 대한 신념을 바탕으로 활동을 시작하며, 여성, 소수자, 이주민,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권리 보호를 위해 활동함.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 선택을 넘어 공동체와 미래 세대를 위한 필수적 대응으로 인식됨.
- 그러나 인권옹호 활동은 매우 높은 위험을 수반하며, 폭력, 위협, 체포, 고문 등 다양한 형태의 탄압에 직면함. 특히 분쟁 지역이나 권위주의 국가에서는 생명과 안전에 대한 직접적 위협이 상시적으로 존재함.
- 특히 2024~2025년 주요 공여국의 인권 분야 예산 삭감과 외국 자금 규제 강화로 인해 인권옹호자와 단체의 활동 역량이 크게 약화됨. 이에 따라 긴급 보호, 법률 지원, 심리적 지원, 현장 모니터링 등 핵심 기능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는 사례가 증가함.
- 인권옹호자들은 자원 축소 속에서도 연대 강화, 활동 우선순위 조정, 대체 재원 확보 등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이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과중한 업무와 번아웃, 정신건강 악화 등의 위협이 확대됨. 국제인권기준은 여전히 중요한 기준과 언어로 기능하지만, 일부 국가의 선택적 적용과 주요 분쟁 상황에서의 미흡한 대응은 그 신뢰성을 약화시키고 있음. 국제 메커니즘 역시 일정한 보호 효과가 있으나 접근성 부족, 대응 지연, 구속력 한계 등 구조적 한계가 존재함.
- 특별보고관은 인권옹호자 보호를 위해 국가의 책임 강화, 재정 지원 확대,

국제 메커니즘 개선, 보복 방지 및 책임성 강화 등을 강조하며, 인권옹호자가 인권 체계 유지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재확인함.

※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3. 3.)

- 한국 정부는 인권옹호자가 인권 증진과 보호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핵심 주체임을 강조하며 최근 재정 삭감, 위협, 보복 및 초국가적 탄압 등으로 인해 인권옹호자의 활동이 제약되고 있다는 점에 깊은 우려를 표명함. 이러한 상황이 인권옹호자의 효과적 참여를 저해하고 있음을 지적함.
- 특히 디지털 기술의 활용 가능성에 주목하며, 자원 부족과 업무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서 신기술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함. 아울러 유엔 인권 메커니즘에서 접근성 및 언어 장벽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활용과 관련된 구체적 제도 개선 및 혁신 방안에 대한 특별보고관의 견해를 질의함.

2)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

○ 적절한 주거권과 재정착에 대한 이행지침(주거권 특별보고관, A/HRC/61/43)

- 코로나19 팬데믹은 적절한 주거가 생명권과 건강권 보호에 필수적임을 확인했으며, 당시 주거 불안정과 퇴거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됨. 다만 일부 국가는 퇴거 방지 정책 등을 도입하여 대응 가능성을 보여줌.
- 전 세계적인 주거비 상승으로 주거 접근성이 악화되고, 중산층까지 포함한 광범위한 계층이 적절한 주거에서 배제되거나 노숙·비적정 주거에 노출됨. 주거위기는 정책 및 제도 선택의 문제로 지적됨. 강제퇴거는 여전히 광범위하게 발생하며, 소수자·이주민·비공식 거주자 등 취약집단이 특히 큰 영향을 받음. 많은 경우 적법절차 없이 폭력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 법·제도는 여전히 미비함.
- 기후위기는 주거권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며, 재난과 환경 변화로 대규모 이주가 발생하는 한편, 주거 부문 자체도 탄소배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됨. 차별에 기반한 공간 분리는 주거 접근의 구조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인종·성별·국적 등 다양한 사유에 따른 배제가 지속됨. 이주민에 대한 책임 전가 담론 역시 주거위기의 원인을 왜곡하는 요소로 지적됨.
- 노숙을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인권 침해로 평가되며, 처벌 중심 접근은 비효율적이고 차별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남. 토지와 주거는 시장 자산이 아닌 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관리되어야 함이 강조됨.

- 특별보고관은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재정착 지침(Guiding Principles on Resettlement)’ 을 제시하며, 강제퇴거와 비자발적 이주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고, 재정착은 최후의 수단으로서 인권 기준에 부합하게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함.

※ 주거권 특별보고관의 재정착 지침(Guiding Principles on Resettlement) 주요 내용

- 재정착은 강제퇴거와 비자발적 이주를 예방하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제한되며, 모든 과정에서 인권과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함. 적용 범위는 개발사업, 도시개발, 기후변화, 재난, 무력충돌 등 모든 이주 상황에 적용됨.
- 이주·퇴거·재정착 대상자는 적절한 주거, 토지 접근, 비차별, 존엄, 정보 접근, 참여권, 사전동의(특히 선주민), 공정한 보상 및 배상, 효과적 구제 등 포괄적 권리를 가짐. 특히 ‘잔류권(right to remain)’, ‘귀환권’, ‘재정착권’을 핵심 권리로 제시함.
- 국가는 강제퇴거 금지, 이주 예방, 피해 최소화, 재정착 전 지원 제공, 재발 방지, 역외 인권 의무 이행, 구제 및 책임성 확보 등 일반적 의무를 부담함.
- 재정착 시행 시에는 공익 목적의 엄격한 제한, 대안 검토 의무, 영향평가 및 계획 수립, 적절한 주거·토지·공공서비스 확보, 투명성, 참여 보장, 충분한 자원 확보, 장기 모니터링 등 구체적 절차 요건을 준수해야 함.
- 기업, 국제기구, 비국가 행위자 역시 재정착 과정에서 인권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피해 발생 방지, 투명성 확보, 구제 절차 마련, 협력 의무 등을 부담함.
- 모든 행위자에 대해 책임성과 구제 메커니즘 구축이 요구되며, 주거권 침해와 관련된 위반에 대해서는 행정·민사·형사 책임까지 포함한 실효적 책임 추궁이 필요함.

○ 인권 기반 통합적 접근을 통한 SDGs 이행의 모범사례 · 과제 및 교훈(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1/41)

-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인권과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으며, 인권을 중심에 두는 통합적 접근은 SDGs 달성과 불평등 · 빈곤 해소를 촉진하는 핵심 수단으로 제시됨. 그러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목표의 상당 부분이 정체 또는 후퇴 상태에 있음.
- 분쟁, 기후위기, 경제 충격, 부채 증가, 시민공간 축소, 불평등 심화 등 복합적 요인이 SDGs 이행을 저해하며, 특히 취약계층이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 빈곤 해소를 위해 불평등 대응과 권리 기반 사회보호 체계 구축이 핵심으로 강조되며, 단순 경제성장 중심 모델의 한계를 넘어 인권 기반 접근이 필요함. 일부 국가에서는 사회보호 확대를 통해 빈곤과 불평등 완화 성과가 확인됨.

- **성평등, 차별금지**,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leave no one behind)’ 원칙의 실질적 이행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인권 기준에 기반한 정책 설계, 데이터 구축, 취약집단 참여 보장이 요구됨. 다만 해당 원칙은 여전히 선언적 수준에 머무는 한계가 있음.
- **경제** 영역에서는 ‘인권경제(human rights economy)’ 개념이 확산되고 있으며, 재정 여력 확보, 공정 과세, 부채 구조 개혁, 국제금융체계 개선 등이 SDGs 이행과 인권 보장을 위한 핵심 과제로 제시됨.
- **환경** 영역에서는 깨끗하고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가 핵심 기준으로 자리 잡고 있으며, 기후변화와 자원개발이 인권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고 있음. 특히 환경 인권옹호자에 대한 탄압 증가가 주요 우려로 지적됨.
-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사법접근, 시민공간 보장** 등은 SDGs 이행의 핵심 조건이나, 현재 전 세계적으로 시민공간 축소와 민주주의 후퇴로 인해 관련 목표 달성이 지연되고 있음.
-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인권을 SDGs 이행 전반에 통합하고, 재정·데이터·거버넌스·국제협력 전반에서 인권 기준을 강화할 것을 강조하며, 국가·국제기구·기업 등 모든 행위자의 책임과 참여 확대를 권고함.

3) 아동 인권

- **아동 폭력에 관한 연례보고서(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A/HRC/61/38)**
 - 2025년에는 국가, 국제기구, 시민사회, 민간부문 등이 참여하는 다중 이해관계자 협력이 확대되며 아동 대상 폭력 종식에 대한 국제적 동력이 강화됨. 글로벌 장관회의와 Pathfinding Global Alliance⁴⁾를 통해 국가 간 협력과 정책 이행이 촉진되고, 아동 보호를 국가 정책과 개발계획에 통합하려는 노력이 진전됨.
 - 특히 사이버 상 괴롭힘이 주요 과제로 부각되며, 디지털 환경에서 아동이 직면하는 위험이 급속히 확대되고 있음. 사이버 괴롭힘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발생하며 오프라인 폭력과 결합된 연속적 형태를 보이고, 인공지능 기술은 딥페이크 등 새로운 방식으로 피해를 심화시키고 있음.

4) 아동 대상 폭력 종식을 위해 국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협력 플랫폼으로, 2024년 글로벌 장관회의를 계기로 출범함. 각국이 정책·재정·제도 개선에 대한 구체적 공약을 공유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함. 참여 국가들은 아동 폭력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국가 계획 수립, 법·제도 개선, 서비스 강화 등을 추진하며, 서로의 경험과 모범사례를 공유하고 상호 지원을 통해 이행을 촉진함.

- 사이버 괴롭힘은 전 세계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당수 아동이 경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고되지 않고 있다는 문제가 존재함. 피해는 학업 저하, 사회적 고립, 우울·불안, 자해 및 자살 위험 증가 등 심각한 정신건강 및 발달 문제로 이어질 수 있음.
- 국제 및 국가 차원에서 법·정책, 교육, 신고·상담 체계, 기술적 대응 등이 확대되고 있으나, 규범 간 불일치와 집행 한계로 충분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사무총장 특별대표는 아동 권리를 중심에 둔 디지털 거버넌스, 예방 중심 접근, 아동 참여 확대, 그리고 모든 행위자의 책임성과 협력 강화를 강조함.

※ 아동과 무력충돌에 관한 사무총장 특별대표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3. 10.)

- 한국 정부는 사이버 괴롭힘이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 깊은 우려를 표명 하며 특히 아동이 어린 시절에 받은 심리적 피해로 장기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취약 집단임을 강조함.
- 나아가 현재 국제적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에 공감하며 디지털 플랫폼과 인공지능 시스템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책임성 확보, 예방 중심 교육, 디지털 리터러시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함.

○ 아동매매, 성착취, 성적 학대로부터의 보호(아동매매 특별보고관, A/HRC/61/45)

- 디지털 기술 발전으로 아동 성착취 및 성학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딥페이크, AI 생성 콘텐츠, 암호화 플랫폼 등 새로운 기술이 범죄를 확산시키고 있음. 동시에 법적 정의 불일치, 국제 공조 부족, 수사 역량 한계 등으로 대응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코로나19, 무력분쟁, 기후위기 등 복합적 위기는 아동의 취약성을 심화시키며, 빈곤·이주·교육 중단 등과 결합되어 아동 매매 및 성착취 위험을 확대함. 특히의 거리 아동, 소수자 아동, 성별 비순응 아동 등은 보호체계에서 배제되기 쉬운 ‘보이지 않는 피해자’로 지적됨.
- 관광·엔터테인먼트 산업, 채굴 산업 등 다양한 경제 영역에서도 아동 성착취 위험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규제 미비와 시장 구조가 아동을 상품화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문제가 제기됨. 또한 아동 간 성적 유해행동 증가 등 새로운 위험 요인도 나타나고 있음.

- 많은 국가에서 법·정책은 존재하나 이행이 분절적이고, 기관 간 협력 부족, 전문성 부족, 데이터 부재 등으로 효과적인 대응이 제한됨. 특별보고관은 예방 중심 접근, 통합 데이터 구축, 아동 참여 확대, 민간기업 책임성 강화 등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인권 기반의 대응이 필요함을 강조함.

○ 아동 인권에 대한 연례 회의: 분쟁 시 아동 인권 침해와 아동의 권리(2026. 3. 9.)

- 브누아 반 케이르스빌크(Benoit Van Keirsbilck, 아동권리위원회 위원): 무력 분쟁에서 아동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후 대응이 아닌 예방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함. 국제사회가 분쟁 예방과 국제법 이행에 충분히 투자하지 않고 있으며, 법 위반에 대한 책임이 미약하다고 지적함. 아동 보호는 결국 국가의 정치적 의지와 자원 배분에 달려 있음을 강조함.
- 코르둘라 드뢰게(Cordula Droege, 국제적십자위원회 수석 법률책임자): 전 세계 아동의 상당수가 분쟁 환경에 노출되어 있으며 군사화가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함. 안전학교 선언 등 국제 기준의 이행, 군사 절차에 있어 아동 보호 관점 통합, 아동병사 모집 방지, 관련 국제협약 비준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바네사 프레이저(Vanessa Frazier, 유엔 사무총장 아동과 무력분쟁 특별대표): 아동 보호를 위한 국제 인권·인도법 체계는 충분히 존재하지만 이행이 부족하다고 지적함. 증가하는 분쟁과 군사화가 아동에게 장기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으며, 국가 정책과 군사 활동에서 아동 보호를 핵심 요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함.
- 안셀(Yansel, 콜롬비아 아동권리 옹호자): 무력분쟁이 교육 중단, 강제이주, 아동병사 모집 등으로 아동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설명함. 평화구축과 지역사회 지원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새로운 법 제정보다 기존 법의 실질적 이행과 아동의 목소리 반영, 정부의 책임성 강화를 촉구함.

※ 아동 인권에 대한 연례 전일 회의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3. 9.)

- 한국 정부는 무력 분쟁 상황에서 아동이 인권 침해의 주요 피해자임이 확인되었으며 국제인권법에 대한 공동의 이행 의지를 재확인할 필요성을 제기함.
- 한국은 다자협력과 인도적 지원을 통해 분쟁 영향을 받은 아동을 지원하고 있으며, 교육, 식수·위생(WASH), 기초 보건 서비스 등 기본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력을

추진하고 있음. 또한 2025년 유니세프와 함께 ‘Resilience for Children+’ 이니셔티브를 출범함.

- 전쟁의 영향을 경험한 국가로서 아동의 회복과 재통합이 인권 증진과 지속가능한 평화의 핵심임을 강조하며, 향후에도 인권이사회 및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분쟁 아동의 권리 보호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밝힘.

4) 장애인 인권

○ 교통 및 주거를 포함한 장애 포용적 기반 시설(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A/HRC/61/32)

- 장애인은 접근 가능한 교통과 주거 인프라 부족으로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고 참여할 권리가 제한되고 있음. 인프라는 돌봄·지원 체계의 핵심 요소로, 적절한 주거와 이동 수단이 보장되어야 자립생활과 사회참여가 가능함.
- 교통 분야에서는 물리적 접근성 부족, 정보 제공 미비, 차별적 대우 등 다양한 장벽이 존재하며 특히 농촌 지역에서 문제가 심각함. 대중교통뿐 아니라 맞춤형 이동서비스(도어투도어, 택시 등)의 부족과 높은 비용도 주요 제약으로 지적됨.
- 주거 분야에서는 접근 가능한 주택 부족, 높은 비용, 차별적 관행 등이 장애인의 주거권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이 시설수용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음. 특히 여성·아동 장애인은 주거 불안정과 폭력 위협에 더 크게 노출됨.
- 많은 국가에서 법과 정책은 존재하나 이행이 미흡하고, 데이터 부족과 재정·조정 문제로 인해 실질적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음. 보고서는 보편적 설계 적용, 개별 맞춤형 지원, 지역사회 기반 생활 확대, 공공·민간 책임 강화 등을 통해 권리 기반 인프라 구축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장애인의 평등한 정치 참여(장애 특별보고관, A/HRC/61/46)

- 장애인의 정치적 권리는 「장애인권리협약」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으로 장애인은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현저히 과소 대표되어 있음. 특히 투표권 보장에 비해 선거 출마 및 공직 수행에 대한 논의와 정책적 대응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장애인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법적 능력과 관련된 차별적 법률, 낙인과 능력주의(ableism), 접근성 부족, 합리적 편의 미제공, 추가 비용 부담, 정치 교육 및 리더십 기회의 부족 등이 지적됨. 특히 많은 국가에서 ‘의사 무능력(mental incapacity)’ 등을 이유로 출마를 제한하는 법적 장벽이 여전히 존재함.
- 물리적·정보적·디지털 환경의 비접근성은 장애인의 정치활동 참여를 구조적으로 제한하며, 보조인력, 이동, 의사소통 등의 추가 비용은 장애인을 선거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함. 또한 데이터 부족으로 장애인의 정치참여 실태와 장벽이 충분히 파악되지 못하고 있음.
- 여성, 청년, 농촌 거주자 등 장애인 내부에서도 교차적 차별이 존재하며, 정치적 폭력과 사회적 낙인이 참여를 더욱 위축시킴. 특별보고관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법률 폐지, 접근성 기준 강화, 재정 지원, 교육·훈련 확대 등 포괄적 개혁을 통해 장애인의 실질적이고 동등한 정치참여 보장이 필요함을 강조함.

※ 장애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한국 정부 구두발언 (2026. 3. 6.)**

- 한국 정부는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투표권을 넘어 선거 출마와 공직 수행까지 포함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특별보고관이 지적한 것처럼 장애인이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전히 과소대표되어 있으며, 물리적·정보적·디지털 환경의 장벽이 참여를 제약하고 있음을 강조함.
- 한국은 장애인 후보 추천 지원, 선거 기탁금 완화, 선거운동 시 보조인력 허용 등 제도를 통해 출마권 보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공공 웹사이트에 웹 접근성 기준 (KWCA)을 적용하고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을 공유함.

○ 장애인 권리에 관한 연례 상호토론: 교통과 주거를 포함한 장애 포용적 시설 (2026. 3. 6.)

- 아나 비에이테스(Ana Vieitez, 바르셀로나 대중교통공사 보편적 접근성 책임자): 접근 가능한 이동성은 장애인의 자율성·평등·포용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권리이며, 접근성 투자는 사회·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비접근성은 특히 여성에게 불균형적 부담을 초래한다고 강조함. 국제적 기준과 인프라 협력의 필요성 제기함.
- 에스더 나게테이(Esther Nagetey, 국제장애인연맹 청년 펠로우): 장애인 배제는 접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되며, 접근성 부족은 교육·주거·교통·

사회참여를 제한하고 폭력·빈곤 위험을 증가시킨다고 설명함. 접근성은 자립생활의 전제조건임을 강조함.

- 나탈리아 앙헬-카보(Natalia Ángel-Cabo, 콜롬비아 헌법재판소 재판관): 비접근적 인프라는 의존성과 시설수용을 강화하는 요인이며, 권리 인정만으로는 부족하고 이행·재정·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공공 인프라 설계 초기부터 접근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시함.

5) 이주민 인권·인종차별

○ 이주민 인권 보고서(유엔 사무총장, A/HRC/61/31)

- 이주는 안전, 존엄, 기회를 추구하는 인간의 기본적 현상이며, 「글로벌 이주 협약」은 인권에 기반한 포괄적 이주 거버넌스를 제시함. 그러나 현재 이주 정책은 통제 중심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이주민의 취약성이 심화되고 안전하고 합법적인 이주 경로는 제한되는 경향이 나타남.
- 국경 관리 과정에서 군사화·형사 처벌화 경향이 확대되며, 강제송환 금지 원칙 위반, 집단 추방, 과도한 물리적 사용, 자의적 구금 등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음. 특히 구금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나 실제로는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아동을 포함한 이주민이 폭력·착취·열악한 환경에 노출되는 문제가 지적됨.
- 이주 노동 분야에서는 임시노동 프로그램이 구조적 불평등과 권력 불균형을 심화시키며, 저임금 노동자 특히 여성 이주노동자가 착취, 폭력, 권리 제한에 취약한 상황임. 가족결합 제한, 사회보장 접근 제한, 고용주 종속 구조 등이 주요 문제로 나타남.
- 혐오, 특히 외국인 혐오가 증가하며 디지털 환경에서 왜곡된 담론이 확산되고, 이주민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보고서는 인권 기반 이주 거버넌스, 합법적 경로 확대, 구금 최소화, 차별 대응, 책임성 강화 및 국제협력 확대를 통해 이주민 권리 보호를 강화할 필요성을 강조함.

○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 관련 보고서(정부간 실무그룹, A/HRC/61/73)

- 전 세계적으로 인종차별과 혐오가 여전히 심각하게 지속·확산되고 있으며, 특히 디지털 환경에서 알고리즘과 인공지능을 통해 차별이 강화되는 등 새로운 형태로 진화하고 있음. 노예제, 식민주의 등 역사적 불의의 영향이 현재까지 구조적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 강조됨.

- 실무그룹 회의에서는 아프리카계 사람들의 권리에 관한 유엔 선언 초안 논의가 핵심 의제로 다뤄졌으며, 차별금지법 강화, 적극적 조치, 혐오발언 대응, 인종 프로파일링 방지, 구제와 배상 등 국가의 구체적 의무를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진전됨. 특히 배상(reparations)과 역사적 정의 문제가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됨.
- 다수 국가들은 구조적 인종차별이 교육, 보건, 주거, 사법 등 다양한 영역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경찰·사법 시스템에서도 인종 프로파일링과 과도한 처벌 등 차별적 관행이 존재한다고 지적함. 또한 혐오발언과 허위정보 확산이 정치적 참여를 저해하고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키는 문제도 강조됨.
- 실무그룹은 인종차별 대응을 위해 법·정책 강화, 배상 정의 실현, 디지털 환경 규제, 국제협력 확대가 필요함을 강조하며, 특히 더반 선언 25주년을 계기로 정치적 의지를 강화하고 실질적 이행을 가속화할 것을 촉구함.

○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25주년 고위급 패널 토론(2026. 2. 24.)

- 제임스 은디랑구 와웨루(James Ndirangu Waweru,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 이행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 의장): 더반 선언이 인종차별을 구조적·역사적·현대적 현상으로 이해하는 핵심 틀로서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하며, 노예제와 식민주의의 유산이 현재의 인종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지적함. 또한 교육, 보건, 주거, 고용, 사법 및 디지털 영역 전반에서 차별이 지속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더 강력한 행동과 자원,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마틴 춘공(Martin Chungong, 국제의원연맹 사무총장): 더반 선언 이행에 있어 의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국제 인권 기준을 국내 입법으로 전환하고, 정부의 정책 이행을 감시하며, 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는 포용적 대표성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함. 또한 혐오 선동에 대응하고 피해자와 연대하는 공적 리더십의 필요성을 강조함.
- 베아트리스 카리요 데 로스 레예스(Beatriz Carrillo de los Reyes, 스페인 평등부 인종차별대응 국장): 인종차별이 사회·제도·디지털 환경에서 점점 더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력한 제도와 포괄적 법체계, 교육, 시민사회 협력이 실질적 평등을 만드는 핵심이라고 강조함. 또한 반인종차별 노력 약화는 민주주의와 지속가능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함.

- 케티 마르셀로 로페스(Ketty Marcelo López, 페루 중앙 아마존 아샤닌카 선주민 여성단체 대표): 선주민, 특히 여성들이 여전히 국제 반인종차별 체계의 실질적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민주의적 차별과 폭력이 지속되고 있음을 강조함. 이에 따라 더반 선언의 실질적 이행 강화와 함께, 국가들이 탈식민적 관점에서 정책과 행동을 재구성할 것을 촉구함.

5 신규 선출된 특별절차 및 전문가 메커니즘 수임자

- 제61차 인권이사회에서는 총 11명의 특별절차 수임자와 6명의 전문가 메커니즘 수임자들이 새로 임명되었음.

명칭	신규 수임자(국적)
특별절차 수임자	
노인인권 독립전문가	즈베즈단 피르토섹(Zvezdan Pirtosek, 슬로베니아)
미얀마 인권 특별보고관	켈리 앤 에켈스-커리(Kelley Anne Eckels-Currie, 미국)
빈곤 특별보고관	엘레나 카롤리나 디아스 갈란(Elena Carolina Diaz Galan, 스페인)
식량권 특별보고관	소피아 몬살베 수아레스(Sofia Monsalve Suarez, 콜롬비아)
아동매매 특별보고관	아이 기하라-헌트(Ai Kihara-Hunt, 일본)
아프리카계 실무그룹 아시아태평양 대표	존 필립 비논도(John Phillip Binondo, 필리핀)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	안드레아 볼라뇨스 바르가스(Andrea Bolaños Vargas, 콜롬비아)
일방적 강제조치 특별보고관	제이나 잘라드(Zeina Jallad, 팔레스타인)
주거권 특별보고관	콜도 안도니 카슬라 살라사르(Koldo Andoni Casla Salazar, 영국)
캄보디아 인권 특별보고관	토머스 앤드루스(Thomas Andrews, 미국)
현대적 노예제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카타리나 슈바르츠(Katarina Schwartz, 뉴질랜드)
전문가 메커니즘 수임자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 동유럽 대표	라모나 비홀라르(Ramona Biholar, 루마니아)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 서유럽 및 기타 대표	브라이언 킨(Brian Keane, 미국)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 아시아 대표	샤오후이 량(Xiaohui Liang, 중국)
발전권 전문가 메커니즘 아프리카 대표	세르주 알랭 조유 캄가(Serges Alain Djoyou Kamgam, 남아프리카공화국)
선주민 권리 전문가 메커니즘 북극 대표	데일리 삼보 도로우(Dalee Sambo Dorough, 미국)
선주민 권리 전문가 메커니즘 아시아태평양 대표	감 아웅시 심레이(Gam Awungshi Shimray, 인도)

참고 1. 제61차 인권이사회 결의 한국 정부 투표 현황(괄호 안은 발의국)

	제목	찬성-반대-기권
1	이란 이슬람 공화국의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 요르단에 대한 도발적 공격의 인권 영향(바레인(걸프협력회의), 요르단)	투표 없이 채택
2	남수단의 인권 증진(영국, 알바니아, 아일랜드, 노르웨이)	25-4-18 한국정부 찬성
3	시리아 아랍공화국의 인권 지원(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카타르, 튀르키예)	투표 없이 채택
4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동예루살렘 포함)의 인권 상황 및 책임성과 정의 보장 의무(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알바니아 제외))	24-4-19 한국정부 기권
5	지역 인권기구와의 협력(벨기에, 아르메니아, 콜롬비아, 세네갈, 태국)	투표 없이 채택
6	일방적 강제조치가 인권 향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우간다(비동맹운동 대표))	28-17-1 한국정부 반대
7	국제인권규약 채택 60주년(러시아, 벨라루스, 이디오피아, 말리, 베네수엘라)	26-0-21 한국정부 기권
8	아동 매매, 성착취 및 성학대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사이프러스(EU 대표), 우루과이(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대표, 아르헨티나 제외))	투표 없이 채택
9	장애인 권리: 교통 및 주거를 포함한 장애 포용적 디지털 기술과 인프라(멕시코, 뉴질랜드)	투표 없이 채택
10	고문 및 기타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 특별보고관의 권한(덴마크)	투표 없이 채택
11	대외부채 및 기타 관련 국제 금융 의무가 모든 인권, 특히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권한(쿠바)	29-10-8 한국정부 반대
12	모든 사람의 문화적 권리 향유 증진 및 문화적 다양성 존중(쿠바)	투표 없이 채택
13	식량권(쿠바)	투표 없이 채택
14	의사표현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증진과 보호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캐나다, 네덜란드)	투표 없이 채택
15	국가적·민족적·종교적·언어적 소수자에 속한 사람들의 권리: 소수자 문제 특별보고관의 권한(오스트리아, 슬로베니아)	투표 없이 채택
16	적절한 생활수준의 구성요소로서의 적절한 주거와 이와 관련된 비차별 권리(독일, 브라질, 핀란드, 나미비아)	투표 없이 채택
17	이주민의 인권: 이주민 인권 특별보고관의 권한(멕시코)	투표 없이 채택

18	정신건강과 인권(포르투갈, 브라질)	투표 없이 채택
19	투명하고 책임성 있으며 효율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을 통한 인권과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증진(아제르바이잔, 에콰도르, 조지아, 케냐, 말레이시아, 태국, 튀르키예)	투표 없이 채택
20	노숙 상태에 있는 사람들의 인권(브라질, 카보베르데, 도미니카공화국)	투표 없이 채택
21	아동의 권리: 무력분쟁의 영향을 받는 아동의 권리 실현(우루과이(라틴아메리카·카리브 국가공동체 대표), 사이프러스(EU 대표))	투표 없이 채택
22	인권옹호자의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노르웨이)	투표 없이 채택
23	집단살해(제노사이드) 예방(아르메니아)	투표 없이 채택
24	출생등록과 모든 사람이 법 앞에서 인격으로 인정받을 권리(멕시코, 튀르키예)	투표 없이 채택
25	종교 또는 신념의 자유(사이프러스(EU 대표))	투표 없이 채택
26	벨라루스의 인권 상황(사이프러스(EU 대표))	28-4-15 한국정부 찬성
2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인권 상황(사이프러스(EU 대표), 호주)	투표 없이 채택
28	인권 증진 및 보호와 2030 지속가능발전의제 이행(에콰도르, 아제르바이잔, 브라질, 칠레, 피지, 룩셈부르크, 포르투갈, 르완다, 시에라리온, 태국, 우루과이)	투표 없이 채택
29	러시아의 침략으로 인한 우크라이나 인권 상황(우크라이나)	25-4-18 한국정부 찬성
30	미얀마의 인권 상황(사이프러스(EU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1	점령 시리아 골란에서의 인권(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28-3-16 한국정부 기권
32	점령 팔레스타인 지역(동예루살렘 포함) 및 점령 시리아 골란 내 이스라엘 정착촌(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34-3-10 한국정부 찬성
33	팔레스타인 인민의 자결권(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42-0-5 한국정부 찬성
34	더반 선언 및 행동계획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의 권한(케냐(아프리카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5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사람들에 대한 불관용, 부정적 고정관념 및 낙인, 차별, 폭력 선동 및 폭력 대응(케냐(아프리카 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6	현대적 형태의 인종차별, 인종적 차별, 외국인혐오 및 관련 불관용에 관한 특별보고관의 권한(파키스탄(이슬람협력기구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7	말리의 인권 분야에 대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케냐(아프리카 그룹 대표))	투표 없이 채택
38	아이티 당국의 요청에 따른 조정되고 목표지향적인 국제적 대응과 연계된, 아이티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 및 역량강화(아이티)	투표 없이 채택

참고 2. 제61차 인권이사회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UPR) 대상국들에 대해
한국 정부가 내린 권고

국가	한국 정부 권고사항
라이베리아	권고사항 없음
리비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의적 구금과 강제 실종, 특히 여성과 아동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실효적 조치를 취할 것 - 온라인상 위협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폭력으로부터 언론인과 시민사회 활동가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보호망을 마련하며, 이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것
마셜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입 및 비준하지 않은 필수 인권 조약의 가입 및 비준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예방하기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할 것 - 외부 도서 지역 주민들의 건강 및 교육 접근권을 개선하고 경제적 기회 제공을 개선할 것
말라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금 시설을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할 것 - 인신매매 대응 위한 국가 행동 계획(2023-2028)의 완전한 이행을 통해 인신매매에 대응하고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 인신매매를 포함한 아동 착취, 아동 노동, 그리고 아동 혼인 등 유해한 관행으로부터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
몰디브	권고사항 없음
몽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법제를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에 맞도록 하고 언론인과 인권옹호자가 그들의 두려움 또는 부당한 개입 없이 자유롭게 정당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할 것 - 시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의 완전한 향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해 노력하고 에너지 효율이 높은 난방 시스템과 친환경 에너지 자원을 도입할 것 - 디지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장애인의 보편적 디지털 기술 접근권을 보장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
벨라루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엔 인권 메커니즘, 특히 벨라루스 인권 상황에 관한 특별보고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증진할 것 - 독립적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하기 위한 구체적 절차를 밟을 것 - 표현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제적 의무와 기준에 맞도록

	<p>보장하기 위해 실질적 조치를 취하고, 테러 대응과 테러방지법을 정부에 반대하는 사람을 침묵시키는 데 사용하는 것을 멈출 것</p>
불가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제실종으로부터 모든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 기준을 고려할 것 - 옴부즈퍼슨 기구가 국가예방메커니즘(NPM)으로서 소수집단과 취약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을 보호하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데 충분한 예산과 인력을 둘 수 있도록 노력을 배가할 것 - 언론인의 표현의 자유 보호를 위해 법 개정 등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할 것
안도라	권고사항 없음
온두라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언론인과 인권옹호자들에 대하여 형법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행위를 예방하도록 실효적인 조치를 채택하고, 이들에 대한 인권 침해를 시의적절하고 효과적이며 공평하고 총체적으로 조사하여 불처벌 문제를 해결할 것 - 비상 사태에 따라 도입된 모든 조치가 필수적이고, 비례의 원칙에 맞으며, 일시적이고, 사법 해석을 받도록 보장할 것 - 모든 형태의 젠더 기반 폭력, 특히 여성과 소녀에 대한 폭력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
자메이카	권고사항 없음
크로아티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효적인 조사와 기소, 피해자 지원, 관용 증진을 위한 대중 인식 개선 노력을 통해 온·오프라인 모두에서의 혐오범죄와 혐오발언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 - 포괄적이고 피해자 중심의 배상 체계를 증진하고 시민사회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전쟁 범죄와 분쟁과 관련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 대한 정의, 진실, 배상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증진할 것 - 가족과 지역사회 기반의 대안을 확대하고 이주와 관련한 아동 구금을 종식하며,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와 분리된 아동의 적절한 수용과 돌봄을 위해 아동 보호 체계를 더욱 개선할 것
파나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 참여, 시민 공간, 그리고 인권옹호자 보호에 있어 인권 원칙을 따를 것 - 선주민의 대지 및 자원에 관한 권리를 보장하고 사전 정보에 기반한 자유로운 동의를 제도화할 것 - 다리엔 갭의 사람들을 포함한 이주민과 난민의 권리를 강화하고, 보호 시설의 인권 기준과 난민 신청 절차의 효율성을 개선할 것